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 모양, 색채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고, 또 형상, 모양, 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별의 한글 글자꼴, 한 별의 영문자 글자꼴, 한 별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별의 숫자 글자꼴, 한 별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별의 한자 글자꼴일 것

디자인설정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 선등록여부 조사 자신의 창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 및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 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다.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 시에는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 방문접수 시나 온라인 출원 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 온라인 수수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출원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라. 출원번호통지 출원서를 방문접수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 일로부터 약 10일~15일 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온라인 출원 시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kr>) →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심사 심사관은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바. 등록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3개월(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1개월 이내에는 120%, 2~3개월 이내에는 130%, 4~6개월 이내에는 150%의 금액])이내에 최초 1~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추가납부기간 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디자인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은 감면·면제 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 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납부서[설정등록료]를 제출 후 납부도 가능함) 감면·면제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1부와 감면·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포기서[일부디자인포기]를 특허청에 접수한 다음날까지 디자인등록료납부서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디자인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